

민법  
총칙

박성렬

2022년

경찰법학특채  
민법총칙 기출해설



네이버 박성렬 민법총칙 카페

[cafe.naver.com/parklaw](http://cafe.naver.com/parklaw)



## 2022년 경찰법학특채 민법총칙 기출/해설

- 박성렬 교수

【문 0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및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근저당권자 甲이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乙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믿은 甲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앓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이를 번복하여 甲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②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④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예외 없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O):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앓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6.27. 97다12211).

② (X):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7.24. 98다9021).

③ (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1.16. 2005다71659).

④ (X):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



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2.4.28. 2019다238053).

【문 0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③ 「민법」 제1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민법」 제8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허락을 하는 경우 특정한 영업의 전부는 물론 그 중 일부에 대한 영업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④

[해설] ① (O):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현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7.11.16. 2005다71659).

② (O), ④ (X):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허락**’은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서 어떤 영업을 하여도 좋다는 식의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또는 제한(예컨대 전자대리점의 영업을 허락하면서 냉장고는 팔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할 수는 없다.

③ (O):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여기서 ‘**속임수**’란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와 같이 상대방에게 능력자라고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 기망수단이어서야 한다는 적극설이 판례(대판 1971.12.14. 71다2045)의 입장이다.

【문 0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년 경찰법학>

- ① 성년후견의 원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다.
-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③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등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



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O):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9조 제1항).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제12조 제1항),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제14조의2 제1항).

② (O):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10조 제1항, 제140조). 그러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③ (X):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9조 제1항).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④ (O): 「민법」 제14조의3 제1항.

【문 04】 甲은 A 항공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장을 가던 중 그 항공기가 2016년 4월 1일 태평양 상에 추락하여 생사가 불명이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별개의 사안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2018년 5월 1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면 甲은 실종기간 만료 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甲의 배우자 乙은 A 항공기 추락 후 1년간 甲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2018년 5월 1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면 甲은 실종선고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 2018년 5월 1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甲의 배우자 乙은 甲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이를 丙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이후 甲이 생존하고 있음이 판명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이 모두 동의라면 甲은 丙을 상대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O):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 즉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한다(대판 1977.3.22. 77다81).

② (O):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③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 실종선고시주의(×), 실



종기간만료시주의(O)

④ (O):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선의'란 계약의 당사자들이 모두 선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수설). ⇨ 쌍방선의설

**【문 05】**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법인도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 ②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의 범위 내'의 의미는 정관에서 열거한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 ④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민법」상 자연인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제1000조), 법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O):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판 2004.3.26. 2003다34045; 대판 2008.5.15. 2007다23807).

③ (O):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대판 2013.11.28. 2010다91831).

④ (O): 대판 2004.2.27. 2003다15280.

**【문 06】**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그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해 등기할 방법이 없어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준용될 수 없다.
- ④ 다수의 교인들이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에서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교파에 들어가는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과 잔존 교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① (O):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O):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중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③ (O):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대판 2003.7.22. 2002다64780).

④ (X): 교인들은 교회재산을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공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대판 전합 2006.4.20. 2004다37775).

【문 07】 물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경찰법학>

- ①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다.
- ② 원칙적으로 경작 중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물건이 되지 못한다.
-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O):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제99조 제1항). 여기서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이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되는 독립정착물(예컨대 건물·보존등기가 되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항상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어지는 종속정착물(예컨대 교량·돌담 등)이 있다.

② (O):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물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면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제256조 단서), 나아가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경우에도 그 정착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판 1970.11.30. 68다1995 ; 대판



1979.8.28. 79다784).

③ (O) : 「민법」 제212조.

④ (X)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결 1998.10.28. 98마1817). 즉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므로써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대판 1974.6.11. 74다542 등).

【문 08】 다음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유효는 O, 무효는 X)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에 위배되는 투자수익보전약정
- ㉡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합의
- ㉢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
- ㉣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중 그 초과부분

- ① ㉠(O), ㉡(X), ㉢(X), ㉣(X)
- ② ㉠(X), ㉡(O), ㉢(X), ㉣(X)
- ③ ㉠(O), ㉡(X), ㉢(O), ㉣(O)
- ④ ㉠(X), ㉡(O), ㉢(O), ㉣(X)

□정답□ ②

[해설] ㉠ (X) : 구 「증권거래법」상 관련 규정은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와 함께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한 투자신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99.3.23. 99다4405).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 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O)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

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판 1993.1.26. 92다39112).

㉔ (X):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87조 제1항 제2호)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2022.4.14. 2019다299423).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대판 2020.4.29. 2018다263519).

㉕ (X):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 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판 전합 2007.12.20. 2005다32159 ; 대판 2021.7.29. 2017나243723).

【문 09】 다음 중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㉑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 ㉒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㉓ 부채관계를 해소하면서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금전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 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
- ㉕ 부채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① ㉑㉒                      ② ㉒㉓                      ③ ㉓㉔                      ④ ㉔㉕

□정답□ ②

[해설] ㉑ (O): 형사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성공보수약정 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 전합 2015.7.23. 2015다200111). ⇨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다만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3.7.11. 2011다18864 참조).

㉒ (X):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



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0.7.29. 2009다 56283).

㉔ (X): 피고가 원고와의 부침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어려운 생활에서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지내야 하는 원고의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침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80.6.24. 80다458). ⇨ 불륜관계의 단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은 유효하다.

㉕ (O):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입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13.6.27. 2011나5813).

㉖ (O): 부침관계인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침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침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침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6.21. 66다530).

【문 10】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104조는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비율로 판단한다.
- ④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O):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기부행위)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2000.2.11. 99다56833 ; 대판 1993.3.23. 92다52238).

② (O):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행위)의 일종이다. 따라서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대판 1964.5.19. 63다821).

③ (X):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



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2010.7.15. 2009다50308).

④ (O):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대판 전합 2013.9.26. 2011다53683).

【문 11】 진의 아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진의 아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② 진의 아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님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진의 아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X):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제107조 제1항). ⇒ 원칙적 유효, 예외적 무효

② (X): 진의 아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③ (X):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16조 제1항).

④ (O): 진의 아님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11.12.22. 2011다64669).

【문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자의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제3자의 사기행위로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언론에의 제보 등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6.10.12. 2004다48515).

② (X):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3.10. 97다55829).

③ (O): 「민법」 제110조 제2항.

④ (O):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언론에의 제보 등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판 2008.9.11. 2008다27301).

【문 13】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다.
-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③ 표의자의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O),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② (X):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2008.6.12. 2008다19973 ; 대판 2016.3.24. 2015다71795).

③ (X):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④ (X):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제527조 참조). 다만 철회는 늦어도 발신의 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하여야 한다.

【문 14】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④ 통상의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X):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9조).

② (X):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즉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③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제118조).

④ (O):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5.12.23. 2013다81019).

【문 1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 이외에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해설] ㉠ (X):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전합 1983.12.13. 83다카1489; 대판 2001.3.23. 2001다1126).



㉔ (O):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6.27. 97다3828).

㉕ (O): 계약 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16.5.12. 2013다49381).

㉖ (O):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서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7.3.25. 96다51271).

㉗ (X):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98.5.29. 97다55317).

**【문 16】**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③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 ④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대판 2015.4.23. 2013다61398). 즉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제130조), 본인은 **추인에 의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와 동일하게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제133조 본문). ⇨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적으로 확정적 유효로 된다.

② (X):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 선의·악의 불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③ (O):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

④ (O):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35조).

【문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된다.
-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 ① ㉠(X), ㉡(O), ㉢(X), ㉣(O), ㉤(O)
- ② ㉠(X), ㉡(X), ㉢(O), ㉣(X), ㉤(O)
- ③ ㉠(O), ㉡(X), ㉢(O), ㉣(X), ㉤(X)
- ④ ㉠(O), ㉡(O), ㉢(X), ㉣(O), ㉤(O)

□정답□ ①

[해설] ㉠ (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에는 상속인·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같은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이 모두 포함된다.

㉡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제1항).

㉢ (X):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는 것이다(대판 1992.5.12. 91다26546; 대판 1983.9.27. 83므22).

㉣ (O):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대판 2011.4.28. 2010다106702).

㉤ (O):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9.1.31. 2017다228618).



【문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②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③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답□ ②

[해설] ① (O): 「민법」 제151조 제1항.

② (X):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대판 2021.1.14. 2018다223054).

③ (O):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대판 2015.10.29. 2015다219504).

④ (O): 「민법」 제147조 제3항.

【문 19】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2003년 5월 10일 1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 ②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③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다르게 정한 바가 있어도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④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사원총회일이 2022년 8월 17일 14시라면 2022년 8월 9일 24시까지의 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O):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고(제4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 따라서 기산일은 2003년 5월 10일이고, 성년이 되는 날은 기산일의 전일(제160조 제2항)인 2022년 5월 9일 24시, 즉 5월 10일 0시이다.

② (O): 「민법」 제161조.

③ (X):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5조). ⇒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대판 2007.8.23. 2006다62942).

④ (O): 「민법」의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역산되는 기간에도 유추적용되어(대판 1996.7.9. 96누5469),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제157조 본문). 따라서 8월 16일이 기산일이고, 8월 10일



0시로 만료된다. 따라서 늦어도 8월 9일 24시까지 소집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경찰법학>

- 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 의사의 치료, 변호사의 직무, 연예인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④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① (O): 「민법」 제183조.

② (O):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판 2009.12.24. 2007다64556). ⇨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건의 성취 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③ (X):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지만(제163조 제2호·제5호), 연예인의 임금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4조 제3호).

④ (O):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2010.1.28. 2009다73011).